

명 홍무제의 관복제정에 관한 연구

전 혜 숙* · 류 재 운⁺

동아대학교 의상설유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동아대학교 의상설유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A Study on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s Established by Emperor Hong-wu(洪武) of the Ming(明) Dynasty

Hea-Sook Chun* · Jae-Woon Ryoo⁺

Professor, Dept. of Fashion and Textile, Dong-A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Fashion and Textile, Dong-A University⁺

(2004. 8. 21 토고)

ABSTRACT

This paper researches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based on Ming-Shi(明史), Da-Ming-Hui-Dian(大明會典) and Hong-Wu-Li-Zhi(洪武禮制) in the emperor Hong-wu(洪武帝) of Ming dynasty(明).

The system could be divided in to three terms, i.e., the early (initial), the middle and the end (last) terms. In the first(1368) & the third year of the emperor's reign (1370)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s was simple for his people not to be luxurious and for revived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s of the Han dynasty(漢) and annulled the system of the Yuan dynasty(元), because the country was not stable yet. During the middle term of Hong-wu, the 14th (1381) to 16th (1383) year of his reign, people attained luxurious lives and developed a strong sense of rank as the country became more stable. As a result, the system became more complicated when the emperor used the costumes to represent political and social ranking. In the end of the emperor's age, the 23rd (1390) to 26th (1393), it reveals his strong intention to establish a system of costumes that separated the ruler from the ruled. He wanted to strengthen the power of Emperor for his little grandson, Jian-wen(建文帝), who would succeed to the throne and would have absolute power.

These changes became fundamental to the Ming dynasty's costume system and the Ming dynasty kept them for long time.

Key words: Emperor Hong-wu(洪武帝), Ming-Shi(明史), Da-Ming-Hui-Dian(大明會典),
Hong-Wu-Li-Zhi(洪武禮制), official uniforms(冠服), the power of emperor(皇帝權)

I. 서론

중국을 다스린 역대 통치자들은 유가사상에 입각한 질서 있고 규범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종법제도, 작위제도, 품관제도, 교육제도, 과거제도, 복식제도 등을 제정하였다.¹⁾

이러한 여러 제도 가운데서도 복식제도는 治國之道의 수단으로서 사회 신분적 등급을 구별하고, 황권을 보호하고 통치를 공고히 하는 구체적이고 표면화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역대왕조 중에서도明朝는 황제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특히 복식제도의 강화정책은 중국의 역대왕조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민족이었던 원의 세력을 물리친 후, 유교적인 정치질서 체계를 표면화시켜 한족 부흥의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조를 전립한 홍무제는 '驅逐胡虜, 恢復中華'를 목표로 胡문화인 元制를 버리고, 漢制를 택하여 한족의 전통습속을 근거로 하여 명의 복식제도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唐制를 기본으로, 명의 창업목적인 한족 부흥과 한족문화 부활을 통해 유교적 사회질서 속에서 신분의 상하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실시된 복식정책은 왕조설립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 이후 明全代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제정 실시된 명의 복식제도는 당시 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국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조선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선전기 관복제정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명의 관복제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대 관복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홍무제 때 관복제도 중에서도 남자관복에 관한 전반적인 복식제정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관복제도 제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홍무제의 정치이념과 당시 시행된 제반 여러 가지 정책의 목적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홍무제 때 내려진 복식제정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홍무제 때 제정된 남자관복(황제, 황태자, 친왕, 친왕세자, 문무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방법으로는 명대의 관복제도가 잘 나타나 있는 〈大明會典〉²⁾, 〈明史〉³⁾, 〈洪武禮制〉⁴⁾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II. 홍무제의 정치이념과 제 정책

中原에서 異民族인 蒙古族을 몰아내고, 한족 지배를 회복한明朝(1368-1644)의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원나라의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 원나라의 잔존 세력을 몰아내고 漢族국가의 부흥을 결고 일어난 백련교에서 朱元璋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1368년 應天府에서 제위에 올라 국호를 明, 연호를 洪武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대명제국의 창업이었다.⁵⁾

洪武帝라 일컫는 朱元璋은 원나라가 남긴 유목민족의 문화유풍을 없애고, 한족문화 부활을 위해서 唐·宋 정책과 체제를 모범으로 하여, 복고적인 성향의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는 국가기강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원말 동란 중에 피폐된 농촌 재건에 힘쓰며 동시에, 측근 儒者들의獻策에 도움을 받으며 몽골의 풍속, 습관 등을 폐하려는 노력과 함께, 전통적인 유교 이념에 의한 한족왕조의 재건을 위한 정책이었다.⁶⁾

당시 홍무제가 택한 유교주의 정치이념은 주자학의 명분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군신간의 상하관계 질서를 유교주의에 입각하여 군주권을 강화하고자, 즉위 전부터 군신간의 관계에 있어서 '군신지간에는 敬을 위주로 하여야 할 것이니 敬은 禮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예가 바로 서야 상하의 分이 定하여지고, 分이 定하여져야 名이 바르게 되며, 名이 바로 되어야 天下가 잘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⁷⁾ 라며 군신간의 상하질서와 예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홍무제는 유가사상에 입각하여 정치·군사·법률·교육·행정 등 다방면에 대개혁을 단행하여 그의 정치체제를 정립해 나갔다. 그래서 홍무9년 行中書省 폐지, 홍무 13-15년 中書省 폐지, 六部의 독립, 都察院 설치, 大都督府 폐지와 五軍都督府 설치 등의 개혁⁸⁾을 단행하였는데, 이러한 제반기구 개편은 홍무13년 (1380) 胡惟庸의 역모사건⁹⁾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¹⁰⁾ 이는 홍무제가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신호로서 이러한 정치제도 개혁의 추진과 완성은 실질적으로 중국전제정치제도를 새롭게 열어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이 밖에도 대규모 정치적 사건을 일으켜서 명조를 설립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공신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한편, 諸王分封制度¹²⁾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이면에는 국내의 權臣들로부터 朱氏황실의 보위¹³⁾와 함께 변방의 외적 침략을 방어하

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홍무제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기강과 기틀을 다지는데 전념하였으므로 대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쇄국정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에 당·송·원 등 前代와는 달리 상업보다는 농업을 중시하는 農本抑商策을 실시하고, 徒民開墾政策, 治水灌溉施設 정비, 賦役黃冊 제작, 里甲制 등을 실시하여 전란으로 황폐해진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홍무제의 유교이념에 입각한 重農抑商 정책은 元朝에 성행하였던 商本主義를 없앰과 동시에 전통적인 中華문화의 근본인 농업문화를 회복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이 역시 한족문화 부활에 목적을 둔復古 정책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황제권을 강화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제를 실시하여 인재선발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계층을 수렴하는 한편,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순응과 서민 교화를 목적으로 향촌에 社學을 설치하기도 하였다¹⁴⁾

이와 같은 여러 정치 제도와 함께 홍무제는 복식제정을 통해서도 한족부활과 유교적 신분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胡俗인 碣髮 服飾 등을 唐制로 복귀시키고¹⁵⁾ 의복에 차등을 두어 계층별 등급을 엄격히 구별하는 복식제도를 정비하는 등¹⁶⁾ 재위기간 31년(1368-1398)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관복제정을 내렸다.

홍무재위 기간 동안 실시된 관복제정을 살펴보면, 홍무원년(1368) 황제의 곤면복, 홍무3년(1370) 황제, 문무관의 상복, 홍무14년(1381) 문무관의 조복, 제복, 상복, 홍무16년(1383) 황제의 면복, 홍무23년(1390), 홍무24년(1391)에는 문무관의 관복을 등급별로 문양을 상세히 제정하였다. 홍무26년(1393)에는 다시 대규모의 조정을 통하여 광범위한 관복규정을 내렸으며, 이때 제정된 관복제도는 明全代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홍무제가 시행한 모든 정책의 목적은 蒙古體制를 中華體制로 회복하는 것으로서, 유가사상에 입각한 질서 있고 규범적인 사회체제를 굳건히 하고 황제권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표면화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된 관복제도는 가시적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복제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홍무제의 관복제정 내용

홍무제때 내려진 남자 관복제정에 관하여 〈大明會典〉, 〈明史〉, 〈洪武禮制〉를 통하여 황제, 황태자, 친왕, 친왕세자, 문무관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황실의 관복제정

1) 황제관복

(1) 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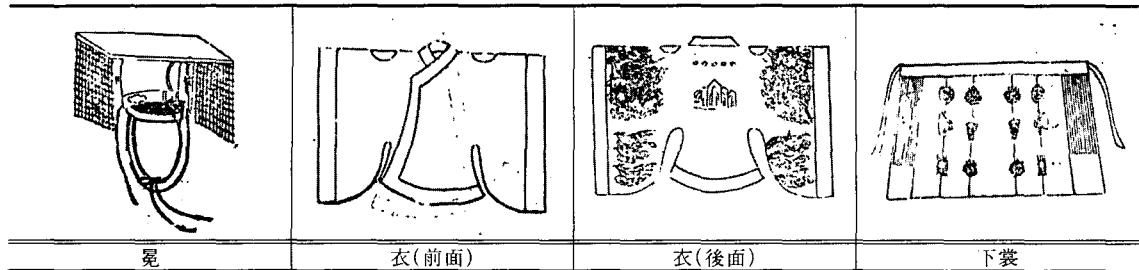
황제의 면복은 홍무원년(1368) 學士 陶安이 五冕을 정할 것을 청하자, 태조는 그 예가 너무 번거로우므로 天地, 宗廟에만 衰冕을 착용하고, 社稷等에 祭祀 지낼 때는 通天冠, 絳紗袍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¹⁷⁾ 홍무3년(1370)에는 正旦, 冬至, 聖節, 社稷, 先農, 冊拜에도 衰冕을 착용하도록 하였다.¹⁸⁾

홍무16년(1383)에는 冕은 前圓後方, 玄表纏裏, 전후 각12旒로서, 각 旒는 5采玉12珠, 紅絲組爲纓, 駚纊充耳, 玉簪導를 하였다. 衰은 玄衣黃裳 12章으로 衣에 日, 月, 星辰, 山, 龍, 華蟲 6章을 織成하고, 衫에는 宗彝, 藻, 火, 粉米, 驕, 獬 6章을 繡 놓았다. 白羅大帶는 紅裏이며, 蔽膝은 衫色과 동일하며, 龍, 火, 山文을 繡 놓았다. 玉革帶와 玉佩를 하였다. 大綬는 6采(赤, 黃, 黑, 白, 繩, 綠)였으며, 小綬는 3개로 색은 大綬와 동일하며, 사이에 玉環 3개가 있다. 白羅中單에는 穀領을 넣고 青色 襪을 대었다. 黃轡, 黃馬에는 金飾을 하였다.¹⁹⁾

홍무26년(1393)년의 제도에서 衰冕은 12章, 면판의 폭은 1尺2寸, 길이는 2尺4寸, 冠上有 覆, 玄表朱裏이며, 나머지는 舊制와 같다. 圭長은 1尺2寸, 袞은 玄衣纏裳이며, 12章은 舊制와 같다. 中單은 素紗로 만들었으며, 紅羅蔽膝은 上廣은 1尺, 下廣은 2尺, 長은 3尺으로 火, 龍, 山 3章을 織成하였다. 革帶佩玉의 長은 3尺3寸이고, 大帶은 素表朱裏로 兩邊에 緣을 들렀는데, 위는 朱錦, 아래는 緑錦을 들렸다. 大綬는 6采(黃, 白, 赤, 玄, 繩, 綠)로 織成하였으며, 純玄質500首이고, 小綬는 3개로 色은 大綬와 동일하며, 사이에 3玉環을 하였다. 朱轡, 赤馬을 신었다.²⁰⁾

(2) 통천관복

홍무원년(1368)에 郊廟, 省牲, 皇太子諸王冠婚, 酋戒에는 通天冠, 絳紗袍를 착용하였다. 冠에 金博山을 더하고, 蟬12개를 붙였으며, 珠翠, 黑介幘, 組纓, 玉簪導를 하였다. 絳紗袍, 深衣製이다. 白紗內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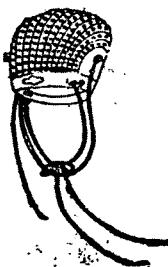


〈그림 1〉 冕服(大明會典)

皂領標襯褶，絳紗蔽膝，白假帶，方心曲領을 하였으며，白鞭，赤舄을 신었다. 革帶，佩綬는 衰服과 동일하다.²¹⁾

(3) 皮弁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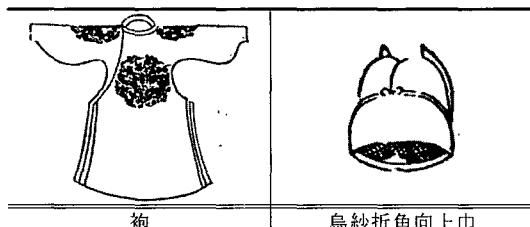
皮弁服은 홍무26년(1393)에 정해진 服制로서 朔望視朝，降詔，進表，四夷朝貢，外官朝觀，策士傳臚 등의 예식에 착용되었다. 皮弁은 烏紗帽로 前後各12縫，每縫綬5采玉 12개로 장식하였고，玉簪導，紅組纓을 하였다. 服은 絳紗衣，蔽膝은 衣色과 동일하며，白玉佩革帶，玉鈎牒緋白大帶를 하였고，白鞭，黑舄을 신었다.²²⁾



〈그림 2〉 皮弁(大明會典)

(4) 상복

황제의 常服은 홍무3년(1370)에 烏紗折角向上巾，盤領窄袖袍，金，琥珀，透犀 등을 사용한 帶를 하였다.²³⁾



〈그림 3〉 常服(大明會典)

2) 황태자

(1) 면복

황태자의 면복은 홍무26년(1393)에 陪祭天地，社稷，宗廟，大朝會，受冊，納妃 등에 착용하도록 정해졌으며，그 제도는 다음과 같다.

衰冕9章，冕9旒，旒9玉，金簪導，紅組纓，兩玉墳이며，圭長은 9寸5分이다. 玄衣纁裳에 衣는 山，龍，華蟲，宗彝，火 5章을，裳에는 藻，粉米，黼，黻 4章을 織成하였으며，白紗中單은 簾領이며，蔽膝은 衣色과 같으며 火，山 2章을 織成하였다. 革帶，金鈎牒，玉佩를 하였고，綬는 5采로(赤，白，玄，縲，綠) 純赤質 330首이며，小綬는 3개이며，色은 동일하고，玉環 3개를 間織하였다. 大帶는 白表朱裏로 위에는 紅緣，아래는 綠緣이며，白鞭，赤舄을 신었다.²⁴⁾

(2) 상복

홍무원년(1368)에 황태자의 常服으로 烏紗折上巾을 정하였다.²⁵⁾

3) 친왕

친왕의 면복은 助祭，謁廟，朝賀，受冊，納妃에 착용하며，朔望朝，降詔，降香，進表，四夷朝貢，朝觀에는 皮弁服을 착용한다.²⁶⁾

홍무26년에 衰冕9章，冕5采5珠9旒，紅組纓，青練充耳，金簪導，玉圭長은 9寸2分5釐，青衣纁裳으로 衣는 山，龍，華蟲，宗彝，火 5章을 織成하였으며，裳에는 藻，粉米，黼，黻 4章을 織成하였다. 白紗中單은 簾領，青緣을 하였고，蔽膝은 衣色을 따랐으며，火，山 2章을 織成하였다. 革帶，金鈎牒，玉佩를 하였다. 綬는 5采로(赤，白，玄，縲，綠) 織成하고 純赤質 330首이다. 小綬는 3개로 色은 大綬와 동일하다. 玉環 3개를 間織하였다. 大帶는 表裏白羅，朱綠緣이며，白鞭，赤舄을 신었다.²⁷⁾

4) 친왕세자

친왕세자의 면복은 聖節, 千秋節并正旦, 冬至, 進賀表箋과 父王生日諸節慶賀에 착용하며, 홍무26년에 정해졌다. 袞冕 7章, 冕3采玉珠 7旒이며, 紅組纓, 青纓充耳, 金簪導, 圭長은 9寸이다. 靑衣는 華蟲, 火, 宗彝 3章을 織成하였고, 纓裳은 藻, 粉米, 脳, 鞍 4章을 織成하였다. 素紗中單, 靑領襍, 赤鞍을 하였다. 革帶, 佩白玉, 玄組綬를 하고, 綬紫質은 3采(紫, 黃, 赤)로 織成하고, 白玉環 3개를 間織하였다. 白韁, 赤舄을 신었다.²⁸⁾

이상과 같이 홍무원년부터 제정된 袞冕制는 天地, 宗廟 등에 제례를 지낼 때만 착용하던 것을, 홍무3년부터는 正旦, 冬至, 聖節, 社稷, 先農, 冊拜에도 착용하면서 곤면의 착용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이는 황제권 강화를 위한 홍무제의 여러 제도적인 강화와 같은 맥락으로써, 황제의 威儀를 드러내기 위해 곤면제를 적극 활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황제의 관복에서 색의 변화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홍무26년(1393)에 내린 곤복제도는 홍무16년에 내린 규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나, 색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冕은 玄表纓裏→玄表朱裏, 衿은 玄衣黃裳→玄衣纓裳, 韁은 黃韁→朱韁, 舄은 黃舄→赤舄으로 홍무26년에 바뀌었다.

또 같은 홍무 26년에 제정된 服制이지만 신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황제의 朱韁이 황태자나 친왕은 白韁이었으며, 또 황태자와 친왕의 복제에서도 형제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색에 있어 황태자는 玄衣이나 친왕은 青衣이며, 大帶의 색이 白表朱裏, 위는 紅色, 아래는 綠色이었으나, 친왕은 表裏白羅, 朱綠緣으로 황태자와 친왕의 복식을色으로서 구별하였다.

이와 같은 색의 변화 의도는 〈明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歷代異尚. 夏黑, 商白, 周赤, 秦黑, 漢赤, 唐服飾黃, 旂幟赤. 今國家承元之後, 取法周, 漢, 唐, 宋, 服色所尚, 於赤爲宜.」²⁹⁾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무제가 元 이후 周, 漱, 唐, 宋을 본 따 赤色을 승상하여 최고통치자의 服色을 火德의 이로운 朱色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皇帝權의 絶對的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상에서 홍무제는 처음에는 곤면복을 간단하게 제정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점차 나라가 안정되자 홍무제는 상하등급을 구별하고자 황제의 복식을 비롯하여 모든 계층의 복식을 제정하는데, 특히 황제

의 면복은 매우 엄격하고 위엄 있는 형체로 완비되었음을 〈표 1〉에서 살펴 볼 수 있다.

2. 문무관의 관복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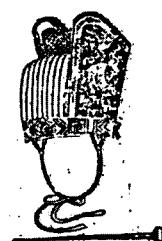
문무관의 관복은 홍무3년(1370)에 常服만 먼저 제정되었으며, 홍무13년(1380) 胡惟庸의 역모사건을 계기로 홍무제가 禮制를 새롭게 하여 신분의 상하 관계를 엄격히 하고자, 홍무14년(1381) 儒臣들을 시켜 〈洪武禮制〉를 편찬하였는데, 그 중에 문무관 관복의 품계별 규정과 색³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홍무24년에는 각 품계별 補子가 정해졌으며,³¹⁾ 이후 홍무26년(1393)에 다시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1) 조복

문무관의 조복은 大祀, 慶成, 正旦, 冬至, 聖節과 頒詔, 開讀, 進表에 착용하였다. 복식제도는 梁冠, 靑飾領緣의 赤羅衣, 白紗中單, 靑緣의 赤羅裳, 赤羅蔽膝, 大帶는 赤·白 2색의 緞으로 만들었으며, 革帶, 佩綬, 白韁黑履가 일습으로 되어있다.

1품에서 9품까지 冠의 梁數와 帶綬로서 등차를 주었으니, 公은 8梁에 簪巾貂蟬, 立筆五折, 4柱, 香草5段, 전후에 玉蟬을 더하였고, 侯는 7梁으로 簪巾貂蟬, 立筆4折, 4柱, 香草4段, 전후에 金蟬을 더하였으며, 伯은 7梁으로 簪巾貂蟬, 立筆2折, 4柱, 香草2段, 전후에 玳瑁蟬에 雉尾를 끊었으며, 駙馬는 侯와 동일하나 雉尾를 끊지 않았다.

1품은 7梁이며, 簪巾貂蟬을 하지 않으며, 玉革帶와 玉佩를 하였으며, 黃·綠·赤·紫織成雲鳳4色花錦, 下結青絲網, 玉綬環2, 2품은 6梁, 犀帶, 犀綬環2, 나머지는 1품과 동일, 3품은 5梁, 金革帶, 玉佩, 黃·綠·赤·紫織成雲鶴花錦, 下結青絲網, 金綬環2, 4품은 4梁은 金革帶, 藥玉佩, 나머지는 3품과 동일, 5품은 3梁, 銀鍛花革帶, 藥玉佩, 黃·綠·赤·紫織成盤鵬花錦,



〈그림 4〉 梁冠(大明會典)

〈표 1〉 황실의 관복제정

明(明史 輿服志)							
身分	用途	制定年度	冠	服	佩帶	圭	鞋襪
皇帝	祭天地 宗廟	1年 (1368)	冕冠	衰服			
			通天冠	絳紗袍			
	祭社稷外	3年 (1370)	冕冠	衰服			
			冕冠(前圓後方 玄表纏裏 前後各十二旒 紅絲組爲纓 駐纊充耳 玉簪導)	衰冕十二章 玄衣黃裳 蔽膝隨裳色	白羅大帶(紅裏) 玉革帶 玉佩 大綬六采 (赤·黃·黑·白·縹·綠) 小綬三 間施三玉環		黃鞶 黃舄 金飾
	祭天地 宗廟 社稷 先農 冊拜 正旦 冬至 聖節	16年 (1383)	冕冠	衰冕十二章 玄衣纏裳 素紗中單 紅羅蔽膝	大帶 (素表朱裏 上朱下綠緣) 玉佩 大綬六采 (黃·白·赤·玄·縹·綠)織成 純玄質五百首 小綬三 間織三玉環	玉圭 (一尺 二寸)	朱鞶 赤舄
			冕冠 (玄表朱裏 冕版廣一尺二寸 長二尺四寸 玉簪導)				
	朔望視朝 降詔進表 四夷朝貢 外官朝觀 策上傳贊	26年 (1393)	皮弁(烏紗冒之 前後各十二縫 每縫綴五采 玉十二以爲飾 玉簪導 紅組纓)	絳紗衣 蔽膝隨衣色	革帶 玉鈞鑣緋白大帶 玉佩		白鞶 黑舄
			常朝	烏紗折角向上巾	盤領窄袖袍	束帶間用金琥珀透犀	
皇太子	陪祭天地 社稷 宗廟 大朝會 受冊 納妃	26年 (1393)	冕九旒 旒用九玉 金簪導 紅組纓 兩玉瑱	衰冕九章 玄衣纏裳 (衣五章 織山·龍·華蟲·宗彝·火 ·裳四章 織藻·粉米·黼·黻) 白紗中單(黻領) 蔽膝隨裳色 (織火·山二章)	革帶 大帶(白表朱裏 上緣以紅 下緣以綠) 玉佩 綏五采 (赤·白·玄·縹·綠)織成 純赤質 三百三十首 小綬三 色同 間織三玉環	玉圭 (九寸 五分)	白鞶 赤舄
親王	助祭 謁廟 朝賀 受冊 納妃	26年 (1393)	冕五采五珠九旒 紅組纓 青纊充耳 金簪導	衰冕九章 青衣纏裳 白紗中單 (黻領 青緣) 蔽膝隨裳色 (織火·山二章)	革帶 金鈞鑣 大帶(表裏白羅 朱綠緣) 玉佩 綏五采 (赤·白·玄·縹·綠)織成 純赤質三百三十首 小綬三 色同大綬 間織三玉環	玉圭 (九寸 二分五 釐)	白鞶 赤舄
親王世子	聖節 千秋節 正旦 冬至 進賀表箋 夫王生日 諸節慶賀	26年 (1393)	冕三采玉珠七旒 紅組纓 青纊充耳 金簪導	青衣三章 (織華蟲·火·宗彝) 纏裳四章 (織藻·粉米·黼·黻) 素紗中單 (青領·赤黻)	革帶 佩白玉 玄組綬 綏紫質 用三采 (紫·黃·赤)織成 間織三白玉環	玉圭 (九寸)	白鞶 赤舄

下結青絲網, 銀鍍金綬環2, 褶은 1품에서 5품까지 象牙笏, 6·7품은 2梁, 銀革帶, 藥玉佩, 黃·綠·赤織成練鵲3色花錦, 下結青絲網, 銀綬環2, 8·9품은 1梁, 烏角革帶, 藥玉佩, 黃·綠織成鶴鶲2色花錦, 下結青絲網, 銅綬環2, 褶은 6품에서 9품까지 槐木笏로 제정되어 있다.³²⁾

문무관의 조복은 흥무14년, 26년에 정해졌는데, 품계에 따른 帶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뿐 복식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표 2)

〈표 2〉 문무관의 조복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冠	14年(1381) 26年(1393)	七梁冠	六梁冠	五梁冠	四梁冠	三梁冠	二梁冠		--梁冠	
服	14年 26年									
帶	14年 26年	玉革帶	犀帶	金革帶		銀鍍金革帶 (14年)		銀革帶	銅革帶(14年)	
						銀鍍花草帶 (26年)				烏角革帶(26年)
朝服	佩	14年 26年		玉佩						
綬	14年 26年	黃·綠·赤·紫織成 雲鳳四色花錦 下結青絲網		黃·綠·赤·紫織成 雲鶴花錦 下結青絲網		黃·綠·赤·紫織 成盤鶴花錦 下結青絲網		黃·綠·赤織成練鵲 三色花錦 下結青絲網		黃·綠織成鶴鶲二 色花錦 下結青絲網
		玉綬環二	犀綬環二	金綬環二		銀鍍金綬環二		銀綬環二		銅綬環二
笏	14年 26年			象牙笏						槐木笏
鞋襪	14年 26年					白襪, 黑履				

〈표 3〉 문무관의 제복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冠	14年(1381) 26年(1393)	七梁冠	六梁冠	五梁冠	四梁冠	三梁冠	二梁冠		--梁冠	
服	14年 26年									
帶	14年 26年	玉革帶	犀帶	金革帶		銀鍍金革帶 (14年)		銀革帶	銅革帶 (14年)	
						銀鍍花草帶 (26年)				烏角革帶 (26年)
祭服	佩	14年 26年		玉佩						
綬	14年 26年	黃·綠·赤·紫織成 雲鳳四色花錦 下結青絲網		黃·綠·赤·紫織成 雲鶴花錦 下結青絲網		綬用黃·綠·赤· 紫織成盤鶴花 錦 下結青絲網		黃·綠·赤織成練鵲 三色花錦 下結青絲網		黃·綠織成鶴鶲二 色花錦 下結青絲網
		玉綬環二	犀綬環二	金綬環二		銀鍍金綬環二		銀綬環二		銅綬環二
笏	14年 26年			象牙笏						槐木笏
鞋襪	14年 26年					白襪, 黑履				

2) 제복

문무관의 제복은 홍무14년, 26년에 정해졌으며, 祀郊廟, 社稷, 文武官 分獻陪祀에 착용하는데, 그 제도를 보면 靑羅衣, 白紗中單, 卤緣의 赤羅裳, 赤羅蔽膝, 方心曲領으로서 冠帶, 佩綬에 등차를 두었으며, 나머지는 朝服과 동일하였다.〈표 3〉

3) 공복

문무관의 공복은 烏紗帽에 團領衫, 束帶³³⁾로서 공복과 상복이 구별 없이 착용되다가, 홍무26년에 공복이 따로 제정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공복은 每日早晚詔奏事, 侍班, 謂恩, 見辭時에 착용하였으며, 在外文武官은 每日 公座時에 착용하였으니, 홍무26년에 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袍는 盤領右衽袍, 紵紗, 혹은 紗羅絹을 사용하였으며, 服色, 花紋, 帶, 笏에 등차를 두었으니, 1품에서 4품은 紺袍, 5품에서 7품은 青袍, 8·9품은 緑袍, 未入流雜織官은 袍, 忽、帶는 8품 이하와 같다.

공복의 花樣은 1품은 大獨科花, 직경은 5寸, 이하는 等級에 따라 花徑의 크기가 달랐고, 관은 嘴頭로서 漆紗로 만들었으며, 전각의 길이는 1尺 2寸이며, 笏은 조복에 따른다.

腰帶는 1품은 玉, 2품은 犀, 3·4품은 金荔枝, 5품 이하는 烏角을 사용하고, 鞍은 青革을 사용했으며, 신은 검은 韁를 신었다.³⁴⁾〈표 4〉

4) 상복

홍무3년에 제정된 상복은 烏紗帽, 團領衫, 束帶로서 常朝, 視事에 착용하며, 補子와 帶로서 등차를 두었는데, 帶는 1품 玉帶, 2품 花犀, 3품 金鍛花, 4품 素金, 5품 銀鍛花, 6·7품 素銀, 8·9품 烏角이며,

〈표 4〉 문무관의 공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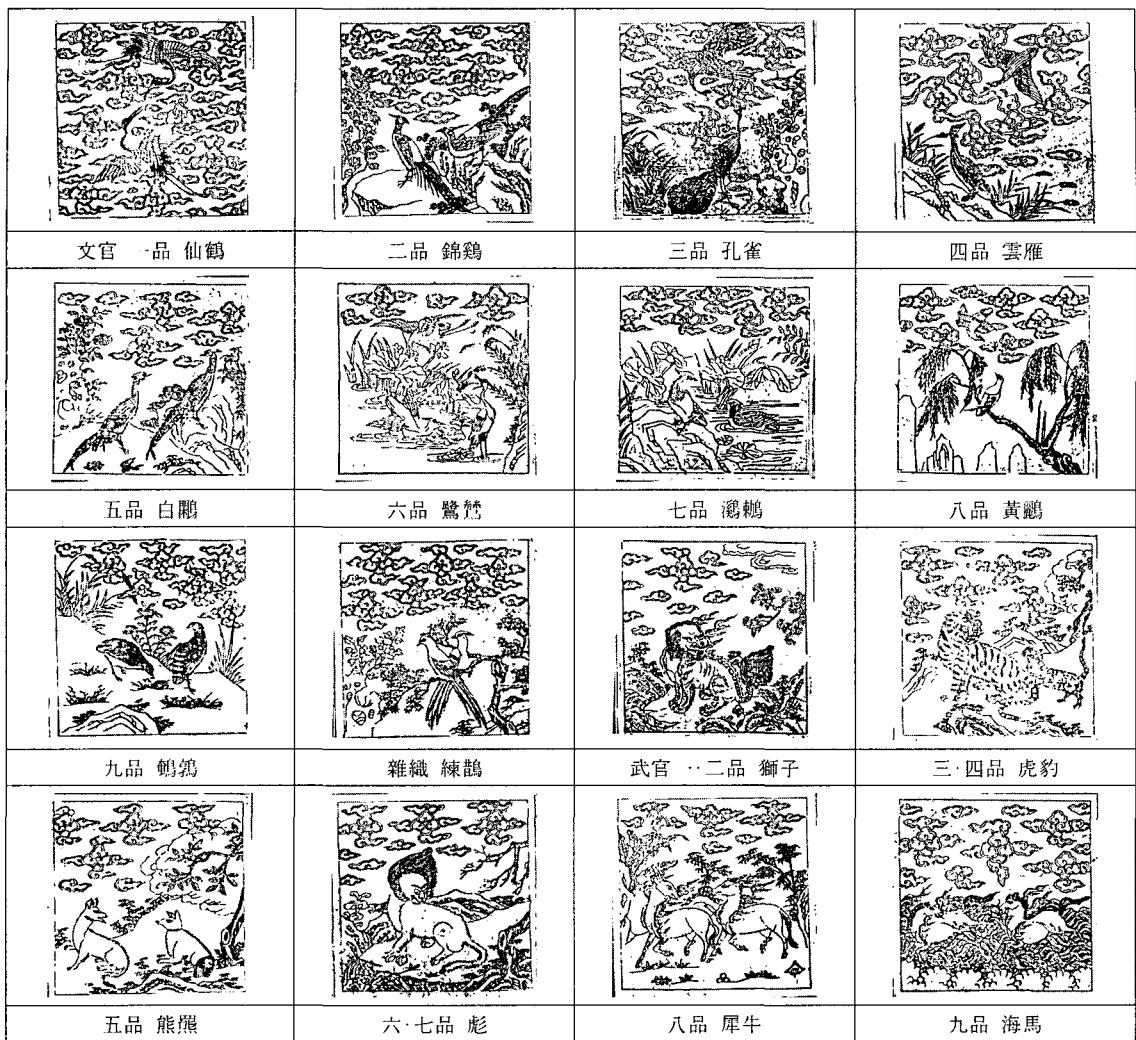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公服	冠	26年 (1393)						幞頭(漆紗爲之 展角長一尺二寸)		
	服	26年			盤領右衽袍(用紵紗或紗羅絹 袖寬三尺)					
				緋色		青色		綠色		
			大獨科花 徑五寸	小獨科花 徑三寸	散答花, 無枝葉 徑二寸	小雜花紋 徑一寸 五分	小雜花紋 徑一寸 五分	小雜花 徑一寸		無紋
	帶	26年	玉帶,或花 或素	犀帶	金荔枝帶			烏角帶		
	笏	26年			象牙笏			槐木笏		
	鞬	26年				皂鞬				

홍무24년(1391)에 제정된 상복의 帶는 公, 侯, 伯, 駙馬의 束帶는 1품과 동일하며, 雜織官은 8·9품과 동일하다.³⁵⁾

홍무23년(1390)에는 옷 길이가 제정되었는데, 그 제도는 문관의 衣는 깃에서 밑단까지 땅에서 1촌 떨어졌으며, 소매길이는 손을 넘어 다시 팔꿈치까지 당도록 하였고, 公, 侯, 駙馬는 東宮과 같으며, 무관은 땅에서 5촌 떨어졌으며, 소매길이는 손을 7촌 넘었다. 상복의 특징이 되는 補子는 홍무24년 품계별로 등차를 주었는데, 公, 侯, 駙馬, 伯은 麒麟, 白澤, 문관 1품 仙鶴, 2품 錦鶴, 3품 孔雀, 4품 雲雁, 5품 白鶲, 6품 驚鶯, 7품 鶻鶲, 8품 黃鸝, 9품 鵠鶲, 雜織練鶲, 風憲官 鰐鷹이며, 무관 1·2품은 獅子, 3·4품 虎豹, 5품 熊羆, 6·7품 虬, 8품 犀牛, 9품 海馬로 규정하고 있다.³⁶⁾

이상 문무관의 常服에서 품계별로 補子와 帶로서 등차를 주었으며, 문관과 무관은 옷의 길이와 문양에 차이를 두어 구별하였음을 〈표 5〉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홍무연간 내려진 신분별 남자 관복제도는 이후 明代 一朝의 복식제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약간의 개정은 있었으나 거의 홍무제 당시 제정된 규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음을 〈大明會典〉, 〈明史〉, 〈洪武禮制〉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림 5〉 补子文様(大明會典)

〈표 5〉 문무관의 상복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常服	冠	3年 (1370) 14年 (1381)	烏紗帽								
	服	3年 14年 24年 (1391)	團領衫 (洪武二十三年定-文官-自領至裔 卯地一寸 袖長過手 復回至肘 武官-衣長卯地五寸 袖長過手七寸)								
	帶	3年 14年	玉	花犀	金鉢花	素金	銀鉢花	素銀		烏角	

IV. 홍무제의 관복제정 특징

중국의 역대 통치계급은 禮制에 의하여 사회통치를 실행해 왔으며, 의식주에서부터 사상의식에 이르기까지 “尊貴有序, 上下有別”하여, 복식에도 신분을 표시하고 등급을 구별하는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복식과 황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易經·系辭〉의 “黃帝, 堯, 舜은 衣裳으로 천하를 다스렸으며, 이는 乾坤에서 축하였다”³⁷⁾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明의 홍무제 역시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상하질서를 바로잡고, 무질서한 사회를 질서화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력한 군주독재제가 정치상 필요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절대적인 황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복식제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홍무제가 내린 복식제정의 목적은 초기부터 ‘驅逐胡虜, 恢復中華’을 목표로 ‘衣冠如悉唐代形制’를 실행하도록 하는 조칙을 발표하여 胡문화인 元의 복제를 버리고, 한족의 전통습속을 근거로 하여 복제를 회복하고자 위로는 周·漢, 아래로는 唐의 복식제도를 취하여 홍무30년간 광범위한 복식제정을 하게 되었다. 이는 복식제도를 통한 황권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역대 중국 왕들의 통치수단 중에 하나인 복식제도를 통해 권력구조의 유지와 황제권 확립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처음 홍무원년(1368)에는 복식제도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학자 陶安이 황제예복으로서 五冕의 전통복제를 홍무제에게 제의하나, 고대의 五冕의 예가 너무 번거롭다하여 天地, 宗廟時에만 곤면을 채용하도록 하고, 社稷 등에는 通天冠, 絳紗袍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문무관의 관복 또한 명확한 제도가 없었다. 이는 홍무제가 이민족을 물리치고 한족으로서 황제 즉위는 하였으나, 그를 견제하는 많은 세력과 국토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衣冠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홍무3년(1370)의 복식제정에서는 황제의 면복, 상복, 문무관의 상복 등 명대복식의 전반적인 복식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홍무제가 복식제도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때 내려진 황제의 면복과 상복은 唐制를 기초로 하여³⁸⁾ 제정하였다. 홍무원년의 관복제도 보다 세분화하여 복식의 형제와 등급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홍무3년 禮部에서 ‘五德終始說’을 근거로 하

여 五德을 설명하되, 夏朝는 黑色, 商朝는 白色, 周는 赤色, 秦은 黑色, 漢은 赤色, 唐은 黃色을 승상했으므로, 明朝는 元 이후 周, 漢, 唐, 宋 등 한족 부흥기의 服色을 쫓아서 赤色 사용을 건의하니.³⁹⁾ 이에 따라 최고통치자인 황제의 복색과 문무관의 공복, 조복에 火德의 이로운 朱色이자, 한족 부흥시에 주色으로 사용되어 온 赤色으로 제도를 변화시켜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색을 통한 국가 기운의 성함과 황제권의 절대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 홍무제의 염원이 담겨진 것이라 생각 되어진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홍무초기 홍무원년(1368), 홍무3년(1370)의 복식제정의 목적은, 元制의 풍속을 없애고 唐制를 근거로 상하간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측면과 사치금제에 의한 등급구별⁴⁰⁾이라 할 수 있다. 즉, 홍무초기의 복식제정은 이민족의 지배아래서 잊어버린 한족의 민족적 자긍심 회복을 위한 목적과 함께 명조를 안정시키고자 홍무제가 복식제도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복식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홍무14년(1381)년의 복식제정은 胡惟庸의 사건(1380)을 계기로 하여 홍무제가 상하질서를 바로잡고자 모든 정치기구를 새롭게 개편하는 한편, 관복제도를 제정해 나가는데, 이때 규정된 관복제정에는 문무관의 조복과 제복의 품계에 따른 자세한 규정과 함께 색⁴¹⁾에 대한 규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홍무제는 유교적인 상하질서를 위하여 관리들의 복색에 제한을 두어 황제가 주로 사용하는 玄色, 黃色, 紫色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황권을 구별하고자 服色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홍무16년(1383)의 복식제정은 황제의 곤면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상 홍무중기에 내려진 홍무14년, 홍무16년의 복식제정은 당시 홍무제가 국가가 점차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자 일부 관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황권을 강화하고자 여러 정치기구를 개편하는 가운데, 군신간의 상하관계 질서를 강조하는 예의적인 부분에 표면적, 가시적 효과가 큰 복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복식정책으로 보여 진다.

홍무23년(1390), 홍무24년(1391)의 복식제정에서는 문무관 상복의 길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補子의 각 품급에 따른 문양에 차등을 두어 상하 구별을 더욱 엄격하게 하였다. 또 홍무26년의 복식제정은 洪武全代에 걸쳐 그 내용과 범위가 가장 광범위할 뿐 아니라 상세하게 내려졌으니, 이는 홍무제가

죽기 얼마 전으로 손자 建文帝에게 안정된 황제권을 물려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미 4차례에 걸친 개국공신의 숙청과⁴²⁾ 諸王分封制度로 황제의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상하질서를 바로 잡아 어린 건문제의 보위 안전을 위하여 전제적 황제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홍무제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긴 복식정책이라 생각된다.

이상 홍무연간에 내려진 복식제정은 초기, 중기, 말기마다 제정 목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홍무 초기에는 元制의 복식을 없애고 漢制로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근검절약을 위한 것으로, 이는 당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기인하여 복식제정이 비교적 단순한 의도로 시작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홍무중기에는 명조의 안정에 따른 사치 근절과 군신간의 등급관념을 강화하는 정치적 안정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니, 服制는 이전보다 한층 복잡해졌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홍무말기에는 황실과 문무관의 관복이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제정되었는데 이는 홍무제 死後 威位를 물려 줄 어린 건문제에 대한 우려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홍무제는 안정되고 강력한 황제권을 물려주고자 복식 제도를 정치적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V. 결론

홍무제 때 제정된 관복제정을 〈明史〉, 〈大明會典〉, 〈洪武禮制〉를 통해 살펴본 결과, 홍무제는 '驅逐胡虜, 恢復中華'를 목표로 元制에서 벗어나 전통 한족 예의를 중시하여 이를 정돈하고 회복시키고자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胡문화인 元制를 버리고, 漢制를 회복하되 위로는 周·漢, 아래로는 唐의 복식 제도를 근거로 明의 服制를 제정하였다.

홍무제는 무질서한 사회를 질서화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독재체제가 정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관복을 여러 차례 제정하게 된다.

홍무연간에 내려진 복식제정은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홍무초기인 홍무원년(1368), 홍무3년(1370)에는 元制의 복식을 없애고 漢制를 회복하고, 근검절약을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 당시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服制가 비교적 간단하였다. 그러나 홍무중기인 홍무

14년(1381), 홍무16년(1383)에 이르러 국토가 안정되면서 사치가 생겨나게 되자, 상하 등급관념을 강화시키고자 홍무제는 복식제도를 구체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服制는 갈수록 복잡해졌다. 홍무말기인 홍무23년(1390), 홍무24년(1391), 홍무26년(1393)에는 황실과 문무관의 복식제도를 확립시켜, 건문제의 보위의 안전을 위하여 전제적 황제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홍무제의 정치적 의도가 강력히 표지되어 나타난다.

이상 홍무연간에 내려진 복식제정은 유교적 이념 하에 元制에서 벗어나 漢制를 회복하고, 상하질서의 예의 관념과 전제적 황권을 공고히 하고자 한 홍무제의 다른 여러 제도와 함께 治國之道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때 내려진 복식제정은 明代一朝 복식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桑秋杰 (2003). 明朝時期中國儒學對朝鮮的影響. 長春師範學院學報, 22(2), p. 52.
- 2) 大明會典은 職官을 중심으로 典章制度를 기록한 것으로 明會典이라고도 한다. 明孝宗 弘治10년(1497)에 徐溥 등이 황제의 칙령으로 편찬한 뒤, 明中宗 正德4년(1509)에 李東陽 등이 수정하였으며, 다시 明神宗 萬曆15년(1587)에 申時行 등이 총재를 맡아 총 228권으로 增補 간행하였다. 〈大明會典〉 권60, 권61에 관복이 신분별, 용도별, 시기별로 상세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관복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史料이다.
- 3) 明史는 清의 張廷玉이 칙령을 받들어 편찬한 것으로 清乾隆 4년(1739)에 완성되어 1751년에 간행된 正史이다. 관복제도는 〈明史〉 卷66, 卷67에 신분별, 용도별, 시기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大明會典〉과 함께 관복제도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보충 자료이다. 그 내용은 〈大明會典〉과 거의 유사하나, 그림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 4) 洪武禮制는 1381년에 홍무제가 종래의 禮制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유신들을 시켜 편찬한 국가의 예식집으로, 服色條에 문무관의 관복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 5) 이춘식 (1991). 中國史序說. 서울: 교보문고, p. 335.
- 6) 松丸道雄, 永田英正, 尾形勇, 小山正明, 加藤祐三 著, 조성을譯 (1990). 中國사개설. 서울: 한울아카데미, p. 277.
- 7) 明太祖實錄 卷十四 甲辰 四月 壬戌.
「國當先正名, ……君臣之間以敬爲主, 敬者禮之本也, 故禮立而上下之分定, 分定而名正, 名正而天下治矣。」
- 8) 주淳東 (1991). 명왕조 성립사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90-189.
- 9) 최정여 (1989). 명조의 통치체제와 정치. 강좌중국사

- IV. 서울: 지식산업사, p. 11.
- 安徽濠洲의 동향 출신의 개국공신으로 중서성 좌승상의 최고권좌에 있던 호유용을 모반죄로 체포, 처형하고 이와 연루하여 관리, 강남 대지주등 1만 5천여 명을 처형,籍沒하였다.
- 10) 이춘식, 앞의 책, p. 336.
- 11) 余興安 (1994). 論朱元璋的政治藍圖及其對明朝政治的影響, 云南社會科學, 1994年 第3期, p. 61.
- 12) 明太祖實錄 卷 ·O三 洪武九年 春正月 甲子, 「天子有子其嫡長子守邦以嗣大統諸子各有茅土之封藩屏王室以安萬姓…」
- 13) 박원고 (2002).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서울: 일조각, pp. 236-237.
- 14) 全淳東, 앞의 논문, p. V.
- 15) 明太祖實錄 卷三十 洪武元年 二月 壬子, 「朕復衣冠如唐制初元世祖起自朔漠以有天下悉以胡俗變易中國之制士庶咸辯髮椎髻深謐胡俗衣服則爲袴褶窄袖及辯線腰褶婦女衣窄袖短衣下服裙裳無復中國衣冠之舊甚者易其姓氏………命復衣冠如唐制士民皆束髮于頂官則烏紗帽圓領袍束帶黑靴士庶則服四帶巾雜色盤領衣不得用黃玄.」
- 16) 明太祖實錄 卷五十五 洪武三年 八月 庚申, 「貴賤明等威是………近世風俗相承流于僭侈閭里之民服食居處與公卿無異而奴僕賤隸往往肆侈於鄉曲貴賤無等僭禮敗度………定議職官自一品至九品房舍車輿器用衣服各有等差庶民房舍不過三間不得用斗拱彩色其男女衣服並不得用金繡錦綺紵絲綾羅止用紬綃素紗首飾釧鏐不得用金玉珠翠止用銀靴不得裁製花樣金線裝飾違者罪之.」
- 17) 明太祖實錄 卷三十 洪武元年 二月 戊辰,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翰林學士陶安等請奏者天子五冕祭天地宗廟社稷諸神各有所用請製之上曰五冕禮太繁今祭天地宗廟則服袞冕社稷等祀則服通天冠絳紗袍餘不用.」
- 18)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 19)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 20)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 21)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 22)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 23)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 24)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 25)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 26)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 27)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 28)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 29)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輿服三.
- 30) 洪武禮制 服色條.
- 「官員人等衣服不得用玄黃紫三等顏色其餘青綠緋碧及淺

淡顏色聽從穿着其朝參官員四時並用顏色衣服不許純素」

- 31) 〈明史〉에서는 常服의 품계에 따른 补子의 제정이 홍무24년으로 되어있으나, 〈大明會典〉에서는 홍무26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32)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輿服三, 大明會典 卷之六十 · 禮部十九, 洪武禮制 服色條.
- 33) 洪武禮制 服色條, 「文武官常朝視事以烏紗帽團領衫束帶爲公服」
- 34)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輿服三, 大明會典 卷之六十 · 禮部十九.
- 35)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輿服三, 大明會典 卷之六十 · 禮部十九, 洪武禮制 服色條.
- 36)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輿服三, 大明會典 卷之六十 · 禮部十九.
- 37) 劉潞 (1989). 服飾與皇權, 古宮博物院刊, 1989년 第2期, p. 41.
- 38) 明太祖實錄 卷三十 洪武元年 二月 壬子.
- 39)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輿服三.
- 40) 明太祖實錄 卷五十五 洪武三年 八月 庚申, 明太祖實錄 卷五十七 洪武三年 冬十月 丁巳, 「是日朝退雨有二內使乾靴行雨中上見召責之曰靴雖微皆出民力民之爲比非旦夕可成汝何不愛惜乃…命左右杖之……自今入朝遇雨雪皆許服雨衣.」
- 41) 洪武禮制 服色條.
- 42) 최정여, 앞의 책, pp. 13-14. 홍무13년(1380) 胡惟庸의 獄, 홍무18년(1385) 郭桓의 獄, 홍무23년(1390) 李先長의 獄, 홍무26년(1393) 藍玉의 獄 등에서 총 10 여만 명이籍沒되었는데, 그중 관료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간인 연루자, 주로 강남의 대지주들이 포함되었다.